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인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완화 하고자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(안 제32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○경상북도 재정과-14971(2005. 8. 19)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.